

구미시 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 이유

- 효율적인 폐기물행정 추진을 위해 과태료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해석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1)
 - 1차위반 100천원, 2차 위반시 200천원, 3차 위반시 300천원

3. 참고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2003. 7)

구미시 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별표1 폐기물관리법란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적용법	부과방법	부과금액(천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관리법	10.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자 법 제15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시간,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제명 :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방법	부과금액 (천원)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10.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자(법 제15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u>장소</u>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개정안

제명 :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방법	부과금액 (천원)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10.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자(법 제5조제2항) 가. ----- ----- ----- ----- <u>시간, 장소</u> ----- -----	100	200	300	

개정이유

제명 띄어쓰기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참 고 자 료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03. 7)

라. 쓰레기 배출시간 지정 · 운영

- 쓰레기 수거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하
되, 가능한 한 일몰후~일출전(20:00 ~익일 06:00)에 배출하도록 규정
- 조례로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를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